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2-5208
인사학술국 국장 정진택[300] 의무민원팀장 김성진[320] 담당 김영균[324]/E-mail: free4u@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13- 01526호

시행일자 2012. 7. 3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한 귀 회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2. 2. 1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2. 8.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동 법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대의원 안내문 1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과목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를협의회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대회원 안내문

지난 2012. 1. 3.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2012. 2. 1. 공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를 포함함으로써 의료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방어진료 확산, 환자와의 분쟁 대폭 증가, 선의의 피해 의료인 발생, 성범죄의 경중에 무관한 일괄적 동일 처분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2012. 8. 2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 진료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협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회원 여러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12. 8. 2.)

현 행	변 경
<p>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u>10년 동안</u>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u>자</u>에 한한다.</p> <p>1.~12. (생략) <신설></p>	<p>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u>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u>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u>사람</u>,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u>의료인에 한한다.</u></p> <p>1.~12. (현행과 같음) <u>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u></p>

2. 법률주요 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함)에 의거, 의료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이 제한됨

3. 참고사항 사항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을 말함